

취업·창업지원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·창업 알선과 취업·창업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업·창업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5.27>

제2조(구성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취업·창업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 및 센터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취업·창업지원센터장이 된다.<개정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조개정 2015.5.27>

제3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<호개정 2015.5.27>

1. 취업·창업 활성화 정책수립 및 추진
2. 졸업(예정)자의 취업·창업상황 파악 및 취업·창업알선과 대책 수립
3. 취업·창업 상담 및 지원의 기본 방침 수립과 실천
4. 취업·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
5. 취업·창업정보의 수집과 분석
6. 기타 취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조개정 2015.5.27>

제6조(전문위원회) 위원장은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7조(주관부서) 위원회의 사무는 취업·창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<개정 2015.5.27>

부 칙(2008. 1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5. 27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